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20호 2009. 3. 17(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2

◀ 입법예고 ▶

○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제2009-444호) 5

○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448호) 10

회								
람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p>훈 시 (3.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및 조기집행 지속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연수 및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는 대상지를 국내로 변경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금으로 하는 등 예산절감과 조기집행을 지속 추진하기 바람. ○ 공중파를 통한 영일만항 홍보 특집프로그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일만항 홍보를 위한 공중파(KBS, MBC, TBC) 방송 특집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3회 의회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업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p>전 부 서 (일본T/F팀) (기획예산과) (기업노동과)</p> <p>항만정책팀</p> <p>전 부 서</p>
<p>'09-0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전결규정 이행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결재가 늦어 업무추진상 직원들의 애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구두 및 전화보고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 경상북도의 전결규정 개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추진 하기 바람. 	<p>자치행정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리그 관중참여 확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시즌카드(3만원선) 구입확대 분위기 조성 과 이용활성화를 통해 관중참여를 확대추진 하기 바 라며, - 일본 니카타에서 서포터즈가 회사를 설립하여 매경 기 3만관중 동원을 성공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바람. 	체육지원과
'09-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해외연수경비 지원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의 일본연수 경비지원금(29만원)이 최근 엔고 에 따라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반드시 확인점검 하기 바라며, - 연수지원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검토 하기바람. 	일본 T/F팀

입법예고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03월 16일

포항시 공고 제2009-444호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시의 대표적 먹거리인 과메기의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포항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정 및 승인에 따라 특구지역 내 농지에 대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대상(안 제2조제1항제4호)

-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신설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심사 규정(안 제3조제2항제6호)

-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신설

3. 참고사항

-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3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26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축산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2691, 팩스 : 054-270-2670)에게 서면,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바랍니다.

포항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내지 제43조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2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의 규정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 하는 경우
4. 포항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농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력에 관하여는 영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 및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
2.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3. 16

포항시 공고 제2009-448호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나, 공공의 복지역량과 지역의 다양한 민간 복지자원의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여 복지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 (안 제3조)

나. 기존 조례의 명칭을 변경된 조례 명칭으로 개정 (안 제14조)

3. 참고사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1.5>

②~③ (생략)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③ (생략)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4.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0번지, 전화 270-2912, FAX 270-2920, E-mail : bypark@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0인 이상 20인” 을 ” 10명 이상 30명 “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각호의 1” 을 ” 각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3조제3항중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10인 이상 20인” 을 “10명 이상 30명” 으로 한다.

제3조제5항중 “각호의 1” 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경제통상과” 를 “사회복지과” 로 하고, “1인” 을 “1명” 으로 한다.

제14조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u>10인 이상 20인</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주민 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u>1인</u>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p> <p>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u>1인</u>을 포함하여 <u>10인 이상 20인</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u>경제통상과</u> 및 보건소 소속 담당 주사 각 <u>1인</u>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p>	<p>제3조(구성) ① ----- -----<u>10명 이상 30명</u>----- -----.</p> <p>② -----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 -----</p> <p>③ ----- ----- ----- -----<u>1명</u>----- -----.</p> <p>④ -----<u>1명</u>----- -----<u>10명 이상 30명</u>----- -----.</p> <p>⑤-----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 -----<u>사회복지과</u>----- -----<u>1명</u>----- -----.</p>
<p>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포항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수당 등) ----- ----- -----<u>포항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 -----.</p>